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0. 27.(수) 14: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5차, 제4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2021-47-14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가> 한국방송공사의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의결한다. <나> 허가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입니다. 방송국 명칭은 KBS제주제1UHDTV방송국이며, 방송사항은 방송사항전반(광고방송제외) 그리고 부가 서비스로 이동형·다채널시범방송과 데이터서비스입니다. 방송구역은 제주시 일원과 서귀포시 일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6월 30일 KBS는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 신청을 위원회에 접수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시청자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7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를 마쳤습니다. 신청서 주요내용입니다. UHD 방송시설 투자계획은 1개 방송국 및 3개 방송보조국 UHD 송신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제주UHD 투자 세부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UHD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은 KBS UHD 제1TV 제주의 경우 2022년도는 23.45%, 2025년도에는 48.37% UHD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UHD 관련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제주총국 인력현황은 총 98명이며, 기술인력은 34명입니다. 제작, 송출,

송신 담당 인력이 UHD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채널 시범방송 계획입니다. UHD 1채널 외 부가서비스로 HD급 재난전문채널 1개와 데이터서비스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전문채널은 평시에는 주중 4시간 30분 이상 자체 편성, 재난 시에는 24시간 재난상황 상시 대응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서비스는 「UHD 재난경보망 구축 사업」 제주총국 실시 이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UHD 방송 홍보계획은 TV, 라디오를 통한 개국 홍보 스팟, 자막방송을 '21년 11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UHD TV 공익광고와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활용할 계획이며, UHD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 방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는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는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방송구역, 혼신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방송국 기술심사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이며, 혼신 방지, 무선종사자 배치, 기술기준 등의 기술적 허가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신청건은 2020년 12월 수립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UHD 전국 방송망 완성'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주지역 UHD 방송망 구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한국방송공사는 이미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에서 UHD방송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로, 신규 UHD 채널은 기존 HD 채널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제주 제1UHD 편성비율은 '22년 23.45%, '24년 35.50%, '25년 48.37%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서 정한 최소편성 비율 기준을 계획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0조의 심사항목별 심사결과는 모든 항목이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허가 여부입니다. 제주 UHD 방송국 개설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결과가 적합하므로 일부 필요한 부관사항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되, 기 허가받은 광역시 UHD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난전문채널을 다채널 시범방송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그 이후에는 방송사의 다채널방송 준비상태 및 법령 정비 현황에 따라 별도의 본방송 허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허가한 수도권 및 광역시 UHD 방송국의 허가조건 및 지역방송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허가 조건(안)입니다.

①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공표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방안'을 준수하고, 정책방안에서 정하는 UHD 콘텐츠 최소 편성비율 이상을 편성할 것, ② 지상파 시청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HD 채널과 UHD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편성할 것(단, UHD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③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권역의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허가 후 9개월 이내에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 계획(UHD 커버리지 조성을 위한 보조국·소출력 중계기 구축계획 포함)을 제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④ UHD 방송 직접수신율 향상과 시청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청자 안내, 광고 등 홍보계획과 UHD 방송 서비스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⑤ 다음 항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2022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하 내용과 무선국 관리 관련

조건(안)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달 중으로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 조건과 <붙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허가 조건 2번 지상파 시청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HD 채널과 UHD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편성할 것, 그다음 팔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려는 경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UHD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곳이 전국 6대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UHD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이번에 제주지역이 UHD 방송이 나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군 지역에는 아직 UHD가 보급이 안 되고 HD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UHD 채널과 HD 채널 편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국민적인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UHD 채널에서 HD 채널과 다르게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게 한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주지역이니까 제주지역에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UHD 프로그램을 특별히 제주지역에서 제작해서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별도로 UHD 편성을 하면 HD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봅니까? 화면이 나빠집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도 UHD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방통위와 사전에 승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이것이 케이블과 달리 지상파 직접수신 온에어(on air)로 할 때는 다른 주파수로 해서 다른 채널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신 수상기도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른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제주도의 하드웨어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소프트웨어는 우리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높여라는 이야기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작년 12월에 발표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올해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시·군단위 UHD 방송망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본방송을 시작한 우리 지상파 UHD는 그간에 성과도 있었지만 낮은 직접수신율과 또 UHD 전용 콘텐츠 부족 이런 점 등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제주 UHD 방송국 신규허가 조건에서처럼 KBS는 직접수신율을 높이고 또 UHD 프로그램 자체 제작 계획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그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사들이 UHD 전국망 투자에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상파 UHD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역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고화질·고품질의 지상파 UHD 방송을 영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상파사업자의 공적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이번 제주

UHD 방송망 구축을 시작으로 구축 일정에 따라 전국망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이번 허가 시 부가된 허가 조건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개설 허가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020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때부터 계획이 됐고, 방송 편성과 기술적 측면 등 적절한 운영계획을 갖춘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원안에 동의 합니다. 제주에 이어서 2022년 전주, 청주, 춘천, 창원 모두 4개의 UHD 방송국이 개설될 예정인데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47-150~15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정지기간 산정에 관련된 위치정보법 시행령 규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부분인데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규정입니다. 저희가 5개 법무법인 측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 의견은 처분의 기준이라는 것은 처분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인 경우 무거운 허가 취소를 선택한다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라는 것은 처분 유형의 사업정지로서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된 것은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정지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처분이 상당히 과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2분의 1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지, 단순 합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이 상당히 가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정보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시정조치(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위반행위를 보고드렸고 사업자가 나와서 의견소명까지는 끝 났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크게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이를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사업정지하는 안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갈음하는 과징금 <2안>으로 의견을 당시에 모아주셨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도 최종 과태료도 <2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셨고, 수사기관 이첩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방안인 <3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선권고(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시행령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I, 일반기준 1호에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서 앞부분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라는 것이 처분의 유형이 다른 경우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직도 모호하긴 합니다. 종전에 논의되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효재 상임위원

- 없습니다. 법률해석을 처분기준을 기간이나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 보고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해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도 가급적이면 규정은 수범자가 보고 수범자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따라 규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고지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바꾸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다 명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시행령 개정 말이 나왔으니까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지금 시행령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별도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 회의에서 모아주신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1-47-15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에 재허가를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허가 만료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이나 외부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허가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령 그리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또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요건 심사입니다. 법 제12조에 따른 재허가신청 법인의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제13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에 대한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량·비계량평가입니다.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심사항목에 대해 계량·비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사항 및 배점은 개량평가(3점)와 비계량평가(97점) 항목으로 구분되고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 시 적격 사업자가 됩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통보하고자

합니다.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허가 조건 부가가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은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랩, 미디어렙에이에 대해서는 재허가 신청서를 '21년 12월 26일~30일까지 접수하고 '22년 2월~3월 중으로 재허가 심사 및 방통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증 교부는 3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서는 '22년 6월 초순에 심사 통지를 하고 8월 25일~31일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11월 재허가 심사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11월에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다는 것은 원안에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21-47-15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라>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20년도 텔레비전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을 1:0.39로 하며, 2020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0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 시청점유율 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은 「방송법」 제6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다음 폐이지입니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100% 반영하여 합산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2020년도 매체교환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 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 합니다. 이용자 조사 및 시장 조사를 통해 2020년도 매체교환율을 측정한 결과, 0.39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산대상은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4개 일간신문으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산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0.39)을 곱하여 환산된 시청점유율을 구한 후, 이를 2020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인 26.764%로 나누어 일간신문구독률의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하게 됩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결과, 조선일보, 계열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458, 중앙일보 계열 2.622, 동아일보 계열 2.585, 매일경제 1.121로 나타났습니다.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대상은 텔레비전 방송 채널(425개)을 운영하는 294개 방송사업자가 되며, 대상기간은 2020년 1년이었습니다.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방송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소유를 반영한 방송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22.832, (주)문화방송 10.169, (주)에스비에스 7.463, (주)조선방송 6.677, 제이티비씨(주) 5.105, (주)채널에이 2.572, (주)매일방송 3.693, (주)와이티엔 3.672, (주)연합뉴스티브이 3.275, (주)씨제이이엔엠 11.3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구독률 반영 합산 시청점유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시청점유율에 일간신문구독률 환산 시청점유율을 합산한 결과, (주)울산방송 0.165, (주)조선방송 11.135, 제이티비씨(주) 7.727, (주)채널에이 5.157, (주)매일방송 4.814, (주)와이티엔 3.701, (주)씨제이이엔엠 11.368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청점유율 제한과 관련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상한(100분의 30)을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20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붙임>으로 연도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년부터는 ABC협회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체부가 새로 마련한 다른 기준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문체부 입장 그리고 진행사항,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서 방송법상 일간신문구독률 산정 시 ABC협회 부수공사 활용 중단 및 정부광고제도의 새 지표인 구독률 조사결과를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광고법 등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규정도 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언론진홍재단에서 매체의 구독률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언론진홍재단을 통해 구독률 산정 작업을 시범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언론진홍재단에서 각 매체의 구독률을 조사해서 문체부에 준다는 것입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만들어진 구독률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 그것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연구반을 구성해서 법률가와 언론학자, 통계학자로 구성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반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ABC협회는 각 언론사가 우리는 몇 부를 발행했다고 한 것을 ABC협회는 가서 검증해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언론진홍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구독률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홍재단에서 새로운 구독률 자료를 내면 저희가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5만 가구를 호구 방문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5만 가구입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5만 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 부위원장

- 국회에 다양한 형태로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김현 부위원장

- 그동안 ABC협회에서 했던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자, QR코드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독률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크게 보면 법 개정 방향은 ABC협회 자료를 정부광고 지원할 때 근거자료로 쓰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표로서 언론진흥재단 등이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실제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이것을 방송법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여부도 그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2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 ABC협회 자료가 정부가 지방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집행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ABC협회 자료가 무력화되면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구독률과 열독률, 온라인 방문자 조사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ABC협회 자료는 쓰지 않는 것으로….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법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금 정부광고법 관련 시행령은 차관회의에 곧 상정되어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정부광고 규정 자체를 고쳐서 ABC협회의 부수자료가 아니라 구독률과 열독률 등으로 대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부처에서 진행되거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김성욱

과장님도 지금 보도에서 접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추정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고….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문체부와 방통위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지금 이 자료는 올해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 아니겠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기초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시청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구독률 환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수자료만 있으면 금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국회나 문체부에서 관련규정이 정비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또 우리가 수치를 산출해 내는데, 대략 정비가 내년도에 2021년을 다시 조사하려면 문체부라든지 타

기관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언제까지 되어야 가능합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BC협회를 문화부에서 추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지정하는데 ABC협회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언론진흥재단에서 ABC협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바로 산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다위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타 기관에서 자료 산정 ABC협회는 안 된 것으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 언제까지 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것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나오면 바로 가구 부수로 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되는데, 저희 방송법에 원래는 시청점유율을 6월 말까지 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ABC협회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고, 원안에는 동의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시청점유율 산정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또 연구반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년 3월~4월 그리고 11월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 부가되었고, 금년 1월~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6월 까지 이행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8월까지는 종편PP 콘텐츠 투자실적에 대해서 회계법인과 함께 이 부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종편·보도PP 5개사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총 21개의 재승인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조건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의성,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편PP 3개사 및 보도PP인 YTN이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TV조선과 YTN은 일부 계획, TV조선은 외부기관과의 협업방안, 시청자 참여관련 계획 등, YTN은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의 이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승인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한 후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내용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점검한 결과, 종편PP 4개사의 관련 법정제재는 각 사별로 5건 이하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중 전국적 동시선거가 개최되지 않아서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건내용입니다.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2개사 모두 방송관련 학회의 연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내용입니다.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겸증절차 개선 및 기자 준칙 등 임직원 내부교육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조건을 채널A에 부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 윤리-멘토링 에디터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검찰출입제도 개선TF 운영, 취재단계 게이트키핑 강화, 취재윤리 관련 임직원 분기별 교육 시행 등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채널A에 대해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할 것, 그리고 내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기자 윤리규칙을 작년 7월에 제정하였고, 내부 상별규정에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했으며, 방심위 제재에 따른 징계 강화를 위해 작년 심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섯 번째, MBN에 대해서 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외주상생 강화방안 등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국장 신임투표제도 마련, 팩트체크넷 참여, 노사동수 시청자위원회 구성, MBN 상생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MBN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N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입니다. 여덟 번째, 종편PP 4개사에 대해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과 또는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월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가 작년 10월~11월 중 각 1건씩을 미고지하여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TV조선에 대해서는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 논의사항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TV조선의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어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열 번째, MBN에 대해서 장르별 다양성 및 편성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편성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실적은 3월 말, 9월 말에 각각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점검한 결과, 편성위원회 개최 시 장르 다양성 및 편성 균형성을 점검하고 향후 편성방향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실적도 제출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한 번째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실적을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종편PP 3개사 모두 '20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사별로 자체제작비로 분류된 기자, PD 등 인건비의 분류기준이 상이하였습니다. 특히 자체제작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한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각 사의 인건비 분류기준을 모두 인정하되, '22년부터는 <붙임 3>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JTBC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소속 기자의 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21년 5월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인사·경영사항의 검토 및 기자단 협의 등을 거쳐 최대주주 소속 기자파견을 2023년 3월 말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월 말까지 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는 광고매출액 중 연합뉴스가 대행하는 광고매출 비

중을 '20년도 90.6%, '21년도 84.4% 등 점차 축소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점검한 결과, '20년도 광고매출액 중 연합뉴스가 대행하는 광고매출 비중은 89.8%입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에 따른 계획이 90.6%이므로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MBN에 대해 경영·재정 관련 개별 조건들을, 열네 번째는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 금지, 열다섯 번째는 경영혁신방안 마련, 열여섯 번째는 자본금 증자방안 마련 및 이행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열일곱 번째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및 선임, 열여덟 번째 업무정지 관련 경제적 책임방안 마련, 열아홉 번째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방안 이행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이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발전 지원계획에 대한 분야입니다. 스무 번째, 종편PP 4개사에 대해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등 위원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1월 말, 7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7월 21일에 편성과가 기 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도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이 부분들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편PP 4개사 모두 위원회 기준을 준수하여 조건을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MBN에 대해서 최대주주 대표자는 방송법 제8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인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장승준 대표이사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드렸고, 다음에는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PP에 대해서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권고사항 중 TV조선 및 채널A는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자가 방송사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권고사항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권고사항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연합뉴스TV의 신임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 겸직금지 및 직원파견 해소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권고사항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 방안입니다. 재승인 조건에 따른 협찬사실을 미고지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부과 여부는 사업자 의견조회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TV조선, 채널A 및 연합뉴스TV에 대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1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사항들을 접수해 주시면 종편PP 2개사 및 연합뉴스TV에 권고 이행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그리고 <붙임 3>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또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편PP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이 <붙임 1>이고, <붙임 2>는 보도PP에 대한 조건 및 권고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중간 점검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간 광고대행을 하지 말자는 것과 파견인력 문제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나름대로의 논리나 아니면 방송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방송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그런 것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은 이 보고에서 어떻게 고쳐질 사안은 아니고 사무처에서 한번 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계획 가운데 인건비의 기준이 다 달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같이 통합된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올해 투자계획을 한번 계산해 보지 않았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일단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혹시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의 쪽 부서 인원들의 인건비를 제작비로 포함시킨 곳이 있고 또 포함시키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작에 투여됐다는 실적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건비 제작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업자들에게 그것이 통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사업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통합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은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고 이런 가이드 자체를 이번 주 중에 사업자들에게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 부분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JTBC 파견 해소 문제는 2023년 3월까지면 앞으로 2년 뒤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때까지 파견 문제를 다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방안은 냈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내부에서 해당 당사자인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회사를 바꾸는 문제여서 일정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간의 기자 파견 문제들을 그동안 우리가 꼼꼼하게 지적해서 나머지 회사들이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되었는데 JTBC 같은 경우 통째로 기자 전체가 다 다른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JTBC는 2023년도까지 하겠다고 한마디로 끝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 권고하고 또 시정해서 마치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 서류상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잘 아시겠지만 JTBC는 일단 점수가 높아서 5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받았고, JTBC는 실적 점검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저희에게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JTBC 이야기로는 이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보고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문제는 파견의 문제가 그동안 나머지 회사들에서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JTBC는 작년에 처음 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딘지 한쪽은 통째로 기자 전체가 다 다른 쪽으로 신분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열 몇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 가지고 방통위가 하나 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른 곳은 권고사항으로 갔고, JTBC는 조건으로 다릅니다. 강도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여튼 2023년도까지 고치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조건이고,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이것보다 느슨했지만 사무처에서 계속 협의과정에서 좀 더 당긴 측면도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사에서 본 위원회가 부가한 조건과 또 권고사항이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또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최소한의 조건과 권고사항이 저는 앞으로도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확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의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방송발전과 방송사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방송법과 윤리강령 차원에서 2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사항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편 4개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보·막말·편파방송과 관련해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를 유지할 것을 내걸었고, 종편 방송사들은 의견상 이 조건을 모두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MBN과 JTBC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각각 1건씩 법정제재를 받은 데 비해 TV조선과 채널A는 5건씩 위반해서 조건 한계치에 다다라 위험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V조선의 경우 실제로는 조건을 위반한 6건의 법정제재에 해당되었지만 1건은 소송으로 법 조건 규정 위반을 우회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건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 때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5건 이하 법정제재를 유지하라는 조건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는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과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저는 공신력 높은 방송사는 적어도 유튜브 채널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편은 이처럼 개선하는데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본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무처에서 조건사항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주셔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편도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를 얻고 또 품격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방송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이 조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시된 권고사항은 지켜지도록 지도할 책임이 본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 중에 보면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보도 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하는 사항을 포함하라는 권고사항이 TV조선과 채널A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은 꼭 필요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넘긴 것은 방송의 자율성을 한번 더 존중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TV조선과 채널A는 공정성 관련 법정제재 5건씩 위반하여 조건 한계치에 다다라 위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종사자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건을 잘 이행하는데 이런 제도적 권고사항은 선행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으로 할 것인지, 권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당시 권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핵심적 권고사항이 내년에는 꼭 지켜지도록 방송사 측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이행점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보고를 보면 예를 들어 공적책임·공정성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편성·기획·제작에 대한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채널A의 경우 2020년도에 협찬고지 위반 여부 미고지가 있는데 2021년도에 지난 보고에 보면 상당한 내용으로 협찬 미고지 내지는 편법 이런 것들이 횡행하다는 것이 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영·재정·기술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행 조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TV조선이 소위 행정청의 결과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있고 TV조선은 2가지 종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채널A의 경우도 2가지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서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통념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과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에 대한 저희가 조건과 이행 권고사항이 정말 충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5개 심의위반을 법정에 가서 회피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방법은 없는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외이사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목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지는지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해당 언론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짓수를 나누어서 보면 몇 개

아니지만 해당 언론사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김창룡 위원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정제재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재승인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보다는 2가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권보호와 윤리성 쪽이 추가가 되었고 선거방송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있고, 소송을 통해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일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재승인 전까지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검토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5건으로 조정된 것이 2017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2020년에 5건으로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JTBC나 또 MBN은 같은 기간에 1건 정도 걸렸는데 TV조선이나 채널A는 5건이라고 분명한 차별이 나는 정도로, 더군다나 조건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 조금 위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철저히 지켜보고 만일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편의점에 들를 시간이 있어서 지난번 KT 통신 중단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으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주에게 여쭤봤더니 “한참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어서 피해를 봤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에 대한 규제 주무부처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모두 경제활동이 블랙아웃(black out)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너무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는 점에 대해 규제당국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용자 보호의 주무기관으로서 KT가 국민들께서 입은 불편과 다양한 피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KT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고 있는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그리고 통신사 등과 협의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설혹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피해배상에 대해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원인을 신중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초기에 디도스(DDos) 공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부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물론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컨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장에 불안함을 더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초 단위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5분 폐회 】